

2135
2136

2001-1 성폭력대책위원회 정기회의(1차)

1. 일 시 : 2001. 4. 13(금) 오후 12시
2. 장 소 : 상남경영원 VIP A룸
3. 참석예정자 : ^{장남}교학부총장, ^{배태수}학생복지처장, ^{윤정숙}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하연섭교수(행정학과), 이영교수(아동학과), 신의진교수(정신과)
김순옥과장(기숙사생활관), 김훈주임(인사계), 김현철주임(노동조합)
총학생회부회장, 여학생회장, 대학원학생회장
4. 보고사항
1)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3)2001학년도 1학기 성폭력상담실 업무보고

5. 안건

★ 불임 ★

- 1)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2)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1. 제정 이유

-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를 규정화 하고자 함

2. 규정 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10.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상담실 게시판 사례
→ 학생에게 상담원에게 보내지 않고
교수 본인에게 보내지 않고
신속대응 학생에게 보냄.
- 1 -
이적성관련 사건 없음.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 ⑥ 상담실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성폭력 상담실에는 1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1인으로 한다. 단 교수, 직원 및 학생위원 3인은 정기회의와 각각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제⑥, 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 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2001학년도 1학기 성폭력상담실 업무보고

1. 성 상담 실시

- ① 내방 상담(여자 상담원:김 영희) 진행 (화 ~ 금)
- ② E-mail 상담(남자 상담원:김 요완) 진행

2. 성폭력 예방교육

【 현재까지 실시된 교육 내용 】

- ① 교직원수양회(2001년 2월)
- ② 신입교원 오리엔테이션(2001년 3월)
- ③ 인터넷 교육 및 리플렛 배부

【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교육 내용 】

- ①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
- ② 교내 방송매체 및 연세춘추를 통한 성교육
- ③ 특강(학기별 2회 실시)

1차 일시 : 5. 7(월) 4시 ~ 6시

강사 : 구 성 애(성상담 전문인)

제목 : 캠퍼스 성폭력

2차 일시 : 6. 14(목) 4시 ~ 6시

강사 : 김 강 자(서울지방경찰청)

- ④ 성폭력 예방교육용 비디오 제작 작업(약10분)

제작의뢰처 : 교내 영상제작센터

3. 성폭력 신고 접수

4. 성폭력상담실 자문위원회 구성(1차 회의일정)

위원 : 교목실장, 성폭력상담실장, 학생상담소장, 여성연구소장

백태승 교수(법학과), 이해경 교수(사회복지학과)

정문자 교수(가족상담), 민성길 교수(정신과)

장성자 실장(여성부 정책실장), 박금자 원장(성폭력위기센터소장)

일시 : 4. 24(화) 12시

장소 : 상남경영관 VIP A룸

5. 성폭력상담실 운영내규 준비 중

상담실 예산
- ~~부부의 약속~~ 예산 다시 올리기로

상담원과 자문
part time 여성상담원 겸직

→ 상담원 수 많아
상담원 상주 필요. → 다음학기

생활자문에게 관련 교육 실시
- 노동부에서 전문.

의뢰인
연구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연구실 전문.

검사와 장에 check list.

성폭. 위험성 문제
위기센터에 자문요청
자문요청 형식.

생활안전
예방교육차로.

자문위원 활동소식지(월간)에
예상내용 실을 수 있음.

사전
강제에 대한 제제 어려움.
제약조건 없음 X

블랙리스트 만들 필요
(이래에 있음)
→ 강사 재인용 안되도록.

상담. 신고 양식.
→ 여성상담원.

매일아침
1-2분

제작하는 연세대학교 산하